

##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도내 사회성과가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보상하는 「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」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, 많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4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### 1. 공고개요

- (공 고 명)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
- (모집규모) 10개 내외 기업
  - \* 모집 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사업 참여기업 수는 조정될 수 있음
- (공고기간) 2026. 2. 24.(화) ~ 3. 13.(금)
- (접수기간) 2026. 2. 24.(화) ~ 3. 13.(금) 18시까지
- (모집대상)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
- (접수방법)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 통해 신청
  - \* 공모 선정 이후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 업무시스템) 사용 필요
- (지원내용) 참여기업 선정 후 기업의 창출한 사회적가치 성과에 비례하여 사업비로 보상

#### ※ 사회적가치지표 (Social Value Index, SVI)

- '사회적가치지표(SVI)'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·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
- 사회적 성과, 경제적 성과, 혁신 성과의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구성

**\* 사업비 지원내용**

분야	항목
연구개발	· 위탁연구, R&D 서비스 활용, 지식재산권 확보 등
생산	· 제품·서비스 고도화 비용, 디자인·브랜딩 개선, 시장테스트, 인증 취득
판로	· 온라인·오프라인 유통망 입점, 홍보 및 전시회 참가, 해외시장 조사 등
컨설팅·교육	· 경영·영업 전략, 직무교육, 직무분석, 회계프로그램 활용 등
재료비 (사업비 30% 이내)	· 시제품 제작, 사회서비스 제공

\* (불인정) 자산취득비, 관리운영비(공과금, 임차료 등), 인건보복지비용, 접대비, 기부금, 벌금 등

- (지원한도) 해당 기업 사회성과의 20% 상한으로 비례하여 지원하되, 최근 3년('23~'25) 내 사회적가치지표(SVI) 양호 이상 (예비)사회적기업은 1억원,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

**\* 단, 성과측정 결과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백만원 지원**

**\*\* 지원금액은 운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**

○ (사업추진절차)



**2. 모집개요**

- (신청자격)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

\*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준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인 기업

※ **(사회연대경제기업)**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(법인)
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'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'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'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'
  - \*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접수 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
- ③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(법인)

○ (우선선발기준)

- (1순위) 2023년 이후 SVI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(예비)사회적기업
  - \* SVI 평가 결과 탁월, 우수, 양호 순으로 선정하고, 평가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
- (2순위) SVI 평가 (예비)사회적기업, 지역 내 우수 (예비)사회적기업
- (3순위)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
- \* '23~'24년 유사사업(SPC 사업 등) 미참여 기업 우선 선정
- \*\* 선정기준: 가치지향성, 측정가능성, 기업가능성, 적극성 등

< 선정 기준 >

○ 정성평가(70점), 정량평가(30점)을 합산하여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

구분	평가항목		배점	비고	
선정순위	SM 양호 이상 기업 → 우수 (예비)사회적기업 → 그 외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		100		
1차 (서류)	[재무상태]	건전성	영업이익 (3년평균)	10	정량
		수익성	당기순이익 (3년평균)	10	정량
		성장성	매출액 증가율 (3년평균)	10	정량
2차 (면접)	[가치 지향성] 기업 사회적가치 지향 및 실현 여부		20	정성	
	[측정 가능성] 사회성과 지표·측정 방식에 따른 측정 가능성		20	정성	
	[기업 가능성] 사회문제 해결 목표 및 기대 수준, 현시점 달성도		20	정성	
	[적극성] 자료 제출, 측정 전담 인력 배치 등		10	정성	

\* 필요시 일부 정성지표(가치 지향성 등)는 서류 검토에서 평가 가능

\*\*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·재무적 성과에 투명성의 제고한 경우 가점 부여(+2)

○ (참여제외 대상)

- '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(SPC)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

-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, 받은 기업
  - \* 사업 간 지원 목적,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-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 제한으로 명시한 기업
  - 개인 또는 법인(단체)의 영리목적을 위한 친목단체
  -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  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·단체

○ (제출서류) \* 붙임 서식 참고

기 본 서 류	1.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신청서 1부 <b>【붙임 1】</b> 2.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<b>【붙임 2】</b> 3. 기업소개서(리플릿, 카다로그 등 서식 자율) 1부 4. 기업 정관 1부 5. 2023~2025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각 1부 6.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7.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(①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서, ②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, ③마을기업 지정서, ④자활기업 인정서) 1부 *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8.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확인서(측정 결과 탁월, 우수, 양호 이상)
측 정 서 류	9. 제품/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(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) 10. 2025년 1 ~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<b>【붙임 3】</b></li> </ul> 11. 2025년 1 ~ 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가로형) 12.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(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) <b>【붙임 4】</b> 13. 2025년 정부·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·수혜 실적 <b>【붙임 5】</b> 14.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<b>【붙임 6】</b>

### 3. 심사방법

- 1차로 서류심사를 하되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,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함
-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기업 면접을 통해 사회성과 측정 대상 기업 선정
  -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순위자를 선정하고, 중도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추가 선정 가능

### 4. 선정결과 공개

- 참여기업 선정 시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고, 개별 통지: 2026. 4. 30.(목) 예정 \* 변동가능

### 5. 유의사항

- 해당 사업은 단순 보조사업이 아니라,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적가치 활동 실적 (기업에서 제출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성과 측정)이 확인되어야 인센티브 (사업비) 지급 가능
- 사회성과 측정은 ‘사회성과 측정 매뉴얼’에 따르며 참여기업은 매뉴얼 숙지 필요
- 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예시
  - 취약계층 대상 제품 및 서비스 등 기부: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, 기부금영수증
  - 장애인,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: 고용보험 가입자명부, 임금대장 등
- 제출서류 누락, 미보완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은 취소됨
-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, 지원기관, 성과측정기관 등에

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사업비 정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「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업무지침」을 따르며, 공고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6. 기타 문의처: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(☎064-710-4182)**